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

2012. 7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개요	1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3
2) 영유아보육법 중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4
3)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8
2.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17
1)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19
2)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2005.1.29)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33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일까지)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44
3.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51
1)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53
2)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2005.1.29)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59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까지)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66

부 록

1.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79
2.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82
3. 보육실습 기준 안내	88
4. 보육교사 3급 제출서류 변경 안내	94
5.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 기준 안내	97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준 연구(2005)’,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 안내서(2006)’,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실무편람(2007)’ 및 담당부처의 지침 (추가검정 기준 등),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결과 등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개요

-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 2) 영유아보육법 중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 3)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개요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1)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을 인정하여 왔음
- 또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온 바, 복잡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 주체의 부재로 시군구청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게 되었음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도입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부칙(제7153호, 2004. 1. 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5. 1. 30 이후부터 시행됨

(3)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도입

- 2005. 12.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부칙(제7785호, 2005. 12. 29) ①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6. 12. 30 이후부터 시행됨

(4) 국가자격(증) 제도의 의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또한, 보육교사도 보육아동을 위하여 보호, 교육 및 가족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

2) 영유아보육법 중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1)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제도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3) 자격증의 교부

관련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4)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관련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령 자료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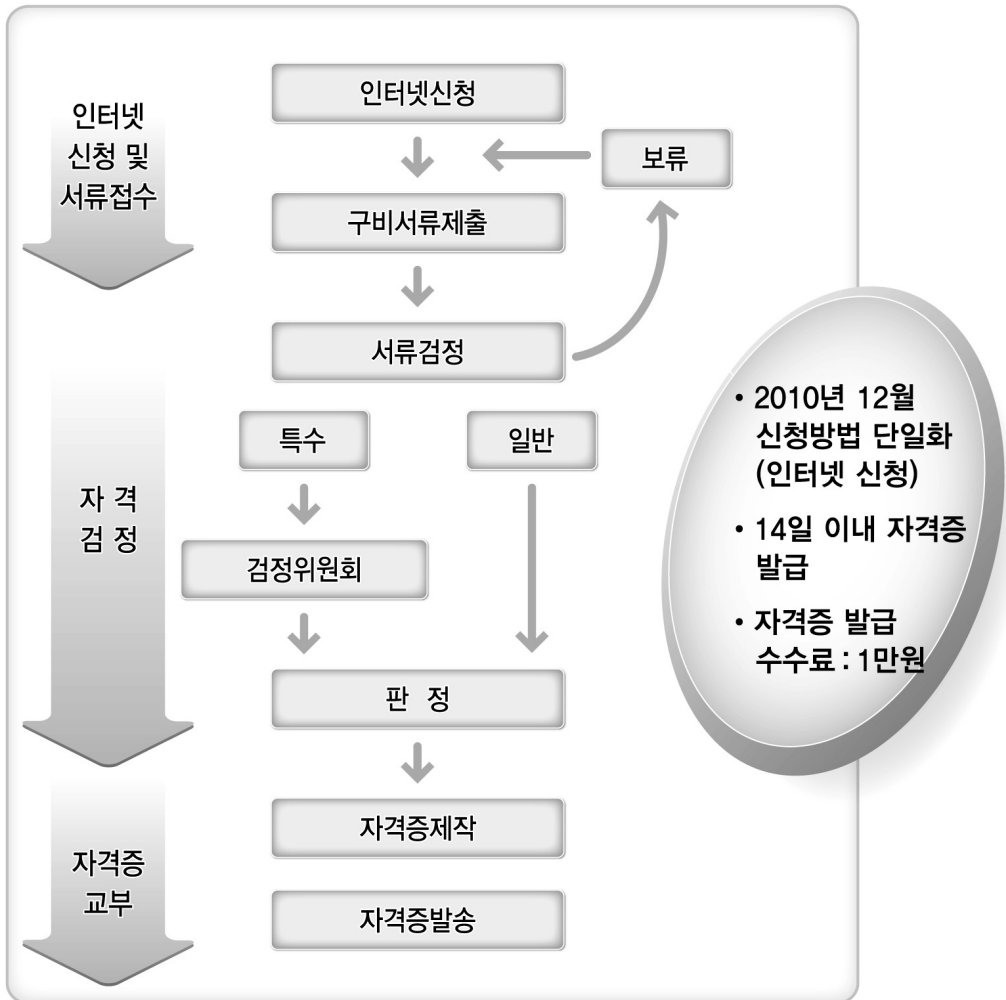


참 고

자격증 교부과정 및 신청방법

-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에서 신청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 조회 가능

- 자격증 교부과정 안내



• 단계별 신청방법 안내



※ 제출서류 보내는 곳

140-7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3)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1)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구 분	자 격 기 준
일 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정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마'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으로 별도 발급 됨

-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개정 「영유아보육법」(2014. 3. 1 시행)에 의한 자격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참 고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현행 자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제도 개정(안) 요약**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 및 사전교육 부재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취약함에 따라 경력 요건 등을 강화하고 사전직무교육 제도를 도입
-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경력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사전직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부여
 - 일반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유치원 정교사 2급
→ 유치원 정교사 1급으로 상향 조정
 -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1급으로 상향 조정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
 -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취사부, 운전원,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어린이집 원장 세부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2011. 12. 8, 시행 2014. 3.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삭제 <2011. 12. 8>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비교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 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 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보육교사 자격기준

참 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현행 자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

***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정(안) 요약**

- ❶ 보육교사 상위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짧은 경력 요건 및 다양한 직종에 대한 경력 인정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 기간을 늘리고,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함
 -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을 1년 → 2년으로 확대
 -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등으로 직종을 제한
- ❷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중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보육교사 세부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2011. 12. 8, 시행 2014. 3. 1)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2011. 12. 8, 시행 2014. 3.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비교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개정 2012.8.17, 시행 2013.3.1)

-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라.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 1)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 2)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2005.1.29)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일까지)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2.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참 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검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기술되었음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기별 명명〉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현행 영유아보육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1991.8.7까지	1991.8.8~2005.1.29	2005.1.30~2014.2.28	2014.3.1~

1)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1) 자격검정 기준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시행 2005. 1. 30)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 종류는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자격기준 또한 일부 변경된 바,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전(2005. 1. 29)까지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2005. 1. 29 이전에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의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구 분	자 격 기 준
일 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정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 아 전 담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 애 아 전 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마’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으로 별도 발급 됨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정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 원장, 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2005. 1. 29 이전 근무한 경력도 인정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 제16조 참고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란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란 어린이집 원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명시)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된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7120호)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 및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가 ~ 바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
 - 위 가) ~ 마)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
 - 기관장 등으로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 서류
 - 공무원 직급 및 업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p>*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및 방과후 과정 확인서류

● 아동간호업무 경력

아동간호 업무 경력
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 서류 : 아동간호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 병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 보건소 : 보건소장 발행 경력증명서 • 초등학교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의 성격이 아동간호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세부적으로 상세기술 요함)

(2) 항목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필요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인정) 시점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함
- 법 적용 기준
 - 2005. 1. 29 이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05. 1. 29 이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 2005. 1. 29 이전에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2년 이상 경과하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 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사본)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유아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유치원 정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필요
 -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는 2급 자격 취득일자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유치원 정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발급 대상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제출서류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양호교사 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은 제외
- 경력 인정 기준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필요
- 제출서류
 -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의사항
 - 종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됨
 - 따라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는 2005. 1. 29 이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2005. 1. 30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불가능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사회복지사 2급 및 3급,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필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 법 적용 기준
 -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차적으로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 2005. 1. 30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검정
-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의사항(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치)
 -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05. 1. 29 이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 인정
 - 2005. 1. 29 이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 불인정
 - 2005. 1. 30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자격 불인정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에 대한 내용 삭제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필요
 - 간호사 면허 취득일은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 법 적용 기준
 - 2005. 1. 29 이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1차적으로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2005. 1. 29 이전에 자격이 인정되는지 검정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
 - 2005. 1. 30 이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현행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제출서류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유의사항(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치)
 - 2005. 1. 29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05. 1. 29 이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 인정
 - 2005. 1. 29 이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 불인정
 - 2005. 1. 30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자격 불인정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중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내용 삭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법 적용 기준
 - 2005. 1. 29 이전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 1차적으로 종전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2005. 1. 29 이전에 자격이 인정되는지 검정



- 2차적으로(불인정 시) 현행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
 - 2005. 1. 30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 현행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②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하여 40인 미만 시설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법 적용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자에게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에는 해당되지 않음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③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 필요
 - 간호사 면허 취득일은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제출서류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아동간호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아동간호업무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④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원장은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대학(교)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사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 전공한 사람이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사람을 말함
-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학 과 명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특수심리치료학과	재활보건학전공	유아특수재활과
운동처방 및 재활전공	아동심리치료학과	직업재활학전공	치료특수교육과
재활공학협동과정	아동상담치료학과	재활선교전공	장애인복지학과
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재활전공	언어치료학과
유아특수재활과	놀이치료학과	재활복지학전공	임상언어치료
재활공학과	작업치료과	인간재활학전공	언어청각교정
재활심리학과	유아특수치료교육과	특수재활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재활과학학과군	특수교육전공	재활복지과	언어교정과
직업재활학과	특수체육학과	자활 및 지역복지전공	유아특수교육과
재활과학과	유아특수보육과		

- 이 외 추가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 법 적용 기준
 - 반드시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위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후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인정
- 자격 인정 시점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졸업)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
- 제출 서류
 - 일반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 서류
 -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보육업무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에 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 인정 기준
 -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이전 또는 이후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인정
- 제출 서류
 - 일반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인가증 사본 또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서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7]에 의한 특별 직무교육 중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자격 인정 시점
 -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이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점
- 제출서류
 - 일반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 서류
 - 보수교육 수료증(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대상자 및 기준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 인정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부설 어린이집이 설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인정함

2)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2005.1.29)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1) 자격검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 8.8 ~ 2005. 1. 29)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서 시설장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영유아보육법」 부칙(제7785호)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2005. 1. 29 이전까지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관련 법률

현행 「영유아보육법」 부칙 7785호 ②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세부 자격기준(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구 분	자 격 기 준
1991. 8. 8 ~ 1996. 1. 5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1994. 2. 18) 11.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1996. 1. 6 ~ 2005. 1. 29	1~6. 동일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996. 1. 6) 8.~10. 동일 11. 삭제(1996. 1. 6) 12. 동일
(중복) 1998. 9. 4 ~ 2005. 1. 29	외국에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정 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사회복지업무 경력
가. 「사회복지사업법」 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 포함)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보육시설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라.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기준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을 근거로 인정여부 결정
-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인정여부 결정
-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무 당시 시설 신고(인가)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항목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는 동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8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보육실습 이수 필수)
- 경력 인정 기준
 - 졸업 후 2005. 1. 29까지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요구 가능
 - 경력증명서(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종전 「교육법」 및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005. 1. 29 이전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 2005. 1. 29 이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
 - 대학원에서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관련[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
 - 다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및 학점이 부족할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보육실습 필수이수)과 연계 가능
 - ※ 대학에서 모든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후 대학원에서 보육 비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 대학에서 보육과 전혀 무관한 학과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보육실습 필수 이수)
- 법 적용 기준
 - 2005. 1. 29 이전 대학원 졸업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2005. 1. 30 이후 졸업자
 - 2005. 1. 30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졸업할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 2005. 1. 29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자의 경우 졸업 시 시설장 자격 인정
(근거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 제출서류
 - 석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발급대상자
 -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1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자
 -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에 관한 사항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2005. 1. 29까지 1년 이상 진료한 경력)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1급·간호사·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3년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을 시 시설장 자격 인정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 소지자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발급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7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 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은 해당사항 없음

● 경력 인정 기준

- 정교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또는 10년 이상의 교육업무 경력 필요
 - 교육업무 경력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가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자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중·고등학교 자격 소지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자격 인정 시점

- 중·고등학교 정교사에 대한 규정은 1996. 1.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 추가된 바, 1996. 1. 6 이후를 자격 인정 시점으로 함
- 1996. 1. 6 이전 초·중·고등학교 정교사로 교육경력 10년을 충족하였더라도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1996. 1. 6로 명시됨

- 제출서류
 - 정교사 자격증 사본(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8 「교육법」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발급대상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제출서류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도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기관장 등)에는 경력 불인정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한 자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담당 업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 발급 대상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자격인정 시점
 - 1994. 2. 17이전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 자 : 1994. 2. 18
 - ※ 1994. 2. 17 이전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영유아 30인 미만의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었으므로,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 취득시점을 1994. 2. 18로 봄
 - 1994. 2. 18이후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 자 :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일
- 제출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11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996. 1. 6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 1996. 1. 5 이전에 승인 받은 자에 한함)

- 발급 대상자
 - 1996. 1. 5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승인받은 자
- 자격 인정 시점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시점
- 제출서류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승인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 보건사회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시설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 1995년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 1996년 ~ 1998년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보건복지부장관 위탁기관
 - ※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은 1991년 ~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자격인정 시점
 - 1991. 8. 7 이전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1991. 8. 8
 - 1991. 8. 8 이후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과정 수료 일자
 - 조건부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이수자는 수료증명서 상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자를 자격인정 시점으로 함
- 제출서류
 -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경력증명서 등 조건부 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건부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비고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은 자(1998. 9. 4 ~ 2005. 1. 29)

- 발급대상자
 - 2005. 1. 29 이전에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 및 2005. 1. 30 현재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동 조항 삭제
- 자격 인정 시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은 시점
 - ※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바, 자격 인정 시점을 승인을 받은 날로 봄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자격증명 서류 원본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 ※ 재외공관장이란 자격을 취득한 나라의 한국대사관을 말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 8. 7일까지)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1) 자격검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 8. 8) 전 채용된 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시설장 자격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1. 8. 8 제정된 바, 시행규칙 제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함(1991. 8. 8 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 8. 8) 전 새마을 유아원, 탁아시설, 사업장 유아시설에 채용된 자로서 1991. 8. 7 이전까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종전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장 세부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2])

구 분	자 격 기 준
아동복지법 (1989.9.19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 사회복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보육사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1989. 9. 19) 6.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2) 항목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1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사회복지관련 학과 전공·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아래 사회복지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관련 학과 인정 범위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 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과

● 경력 인정 기준

- 경력은 1991. 8. 7 이전 경력에 한하고,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1991. 8. 7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의사(한의사, 치과의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로서 1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시설장 자격 인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
-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졸업증명서
 -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자격검정시험 합격증서(4년제 관련학과 외 졸업자)
 - 경력증명서
 - 1991. 8. 7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연구 수행 경력 인정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경력증명서
 -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1991. 8. 7 이전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 연구한 경력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사 1급·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



- 1991. 8. 7 이전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 한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 소지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 소지자

● 제출서류

- 보육사 1급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사회복지업무 경력(7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보육사 1급 자격증명서
 - : 사회복지 관련학과 대학(교) 졸업 증명서
 - :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 대학(교) 졸업 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 보육사 2급 자격 증명서류,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보육사 3급 자격 증명서류,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 서류, 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 졸업 증명서
-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 합격증

: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노동부장관 발급)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사회복지업무 경력(7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간호사의 경우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간호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 영양사의 경우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6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함)

-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적용



3.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 1)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 2)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2005.1.29)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까지)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3.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참 고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자격검정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기술되었음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기별 명명〉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종전 영유아보육법	현행 영유아보육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1991.8.7까지	1991.8.8~2005.1.29	2005.1.30~2014.2.28	2014.3.1~

1)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1) 자격검정 기준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시행 2005. 1. 30)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세부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등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5조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정 경력(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및 방과후 과정 확인서류

(2)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이 가능한 사람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 인정범위

- 1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을 보육관련 대학원으로 인정
 - 2 1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보육관련 대학원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 대학원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보육관련 대학원 과정을 승급교육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으로 중복 인정 불가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이 가능한 사람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석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기준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자격 인정 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시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관련 교과목 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필수 이수)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적용 시기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육관련 교과목 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인정
-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 1. 30 이후)에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를 신청한 사람은 보육관련 교과목 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2급자격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시기에 따른 실습확인서 양식 제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로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가능한 사람
- 제출서류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③ 보육교사 3급 자격검정 기준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 2011년 9월 이후 수료자부터 제출하여야 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2005.1.29)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

(1) 자격검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 8. 8 ~ 2005. 1. 29)에 의해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경과 조치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 2005. 1. 30)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교사 1, 2급 자격이 인정된 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인정함
 - 2005. 1. 30 현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그 학과를 졸업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인정함
 - 2005. 1. 30 당시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함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시행 2005. 1. 30)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영유아 보육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 1. 29 이전까지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관련 법률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3조제1항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세부 자격기준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등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교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

종전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정 경력(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관할 시·군·구청에 보육교직원으로 임면 보고되어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2)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 기준

1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96. 1. 5까지 영유아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동 승급 대상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1996. 1. 5까지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동 승급 대상자로 인정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인정) 시점은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의함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1996. 1. 5까지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만 이에 해당 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996. 1. 6 이후에는 반드시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필요
- 보육업무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인정) 시점은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의함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로 승급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추가검정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 (1991. 8. 8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고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미위탁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만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2005. 1. 29 까지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3년 이상 경력과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의 자격증 신청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논의 및 담당부처의 추가검정 지침으로 기준이 마련됨

-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수료자
 -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한 자
 - 미위탁 시설 수료자들은 종전 영유아보육법 적용시기인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 업무 경력 3년 이상이 경과하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는 보육교사 1급으로 자격인정 가능
 - 승급교육 인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로 승급 수료증 제출 가능 자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자격인정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는 보육실습 필수 이수)
- 자격 인정 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시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의해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 보육실습 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인정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음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적용 시기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 보육실습 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 1. 29 이전)에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를 신청한 자는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1998년 3월 이후 졸업자 보육실습 필수 이수)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는 보육실습 필수 이수)
 -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시기에 따른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제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추가검정기준

1998년 3월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였으나,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보육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시설에 임면보고되어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격증 신청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추가검정기준이 마련됨

-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학에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관련 교과목 10과목 30학점 이수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1998년 3월 이후 졸업자로 보육실습 미이수 자가 이에 해당 됨)
- 보육업무 1년 이상(2005. 1. 29 이전까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적용시기 2005. 1. 29 이전까지의 보육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사본
 -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기준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 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998. 12. 31까지 해당)

- 사회복지사 3급 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1991. 8. 8 ~ 1998. 12. 31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이에 해당 됨(1998. 9.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999. 1. 1 이후부터 폐지조항으로 삭제)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시설 수료증(24주 이수 확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91.8.7까지)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기준

(1) 자격검정 기준

- 「아동복지법」 시기에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및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1991. 8. 7 이전에 충족한 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 및 자격인정 배경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부칙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95호, 1991. 8. 8 제정) 부칙 제3조, 제5조
 - 보육교사 자격인정 배경
 - 1991. 8. 8 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 자격을 인정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5조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유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 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5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부칙에 의한 「아동복지법」 상 자격소지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2])

「아동복지법」(1983. 3. 1 ~ 1991. 8. 7 전)		「영유아보육법」 (1991. 8. 8부터)
교 사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자	
보육사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3. 보육사2급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1급
보육사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사3급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보육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마친 자	

(2)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검정 기준

1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아래 사회복지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사회복지 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유아교육학과, 가정교육과, 간호학과, 의학과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최종학교(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2년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사본
 - 최종학교(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탁아시설에 채용된 경력이 있는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추가검정기준

대학은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대학졸업 이외의 경로(준교사→정교사)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1991. 8. 7 이전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바는 없으나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심의·의결 및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추가검정기준이 마련됨

-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종전 「영유아보육법」 적용시기 2005. 1. 29 이전까지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사본
 - 2005. 1. 29 이전까지 1년 이상 경력증명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1년 이상 보육시설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증명서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사 2급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자격인정 대상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을 인정하며 이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보육사 2급²⁾**

-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3 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1에 해당되는 자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최종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에 해당되는 자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보육사 3급 자격증명 서류
 - 최종학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사회복지업무 경력(6년 이상) 증명서류
 - 사회복지업무 경력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보육사 3급 취득 후 3년 및 보육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이에 해당 됨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 것으로 봄
- 1991.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봄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에게 보육교사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이수하도록 함
- ②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③ 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유치원(초등학교)준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됨

3에 해당되는 자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기준

1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1991. 8. 7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 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 증명서류
 -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해당시설의 최초 인가시점 확인 가능한 서류) 사본 제출을 요함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유치원(초등학교)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탁아시설에 채용된 경력이 있는 자
- 1991. 8. 7 이전 탁아시설 채용된 자의 경력 인정 기준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의 채용 경력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자격검정 가능
-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1991. 8. 7 이전)
 - 유치원(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1991. 8. 8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 1. 13까지 영유아 보육업무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마친 자

-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수료자
 -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위탁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한 자를 미위탁 시설 수료자로 봄
 - 미위탁 시설 수료자는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3항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미위탁 시설 수료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보육교사 2급으로 자격 인정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150시간 이상)
 - 보육교사 자격인정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추가검정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2005. 1. 29 이전까지 이수한 자

〈추가검정기준 마련 배경〉

미위탁 교육훈련시설 수료증만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2005. 1. 29 까지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의 자격증 신청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논의 및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추가검정기준이 마련됨

-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수료자
 - 보건사회부령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시설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한 자
 - 미위탁 시설 수료자들은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육교사 자격인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자
-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2005. 1. 29 이전까지)
 - 미위탁 시설 수료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보수교육은 이수하지 못하고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관련 보수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 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2005. 1. 29 이전까지)
 - 사진(파일등록)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부 록

1.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2.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3. 보육실습 기준 안내
4. 보육교사 3급 제출서류 변경 안내
5.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 기준 안내



1.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1) 학점은행제 학점이수자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386, 2006.2.6)

- 2005. 1. 29 이전 졸업자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 1. 29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종전법에 의하여 보육교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법)
 - 2005년 1월 29일 이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현행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 연계가 가능함
-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현행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이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검정 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졸업자 및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학위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사본, 실습지도교사의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법제처, 2010.3.1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0-0021)

● 질의요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 회답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함)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와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점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이수·인정을 받은 뒤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보육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학점인정 기준 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 일정 학점에 이를 때 대학 졸업학력(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80학점 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규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법령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거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학교에서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여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육교사의 자격을 주려는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 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 제50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2.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여성가족부 2006.5.30)

-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부는 「보육사업안내」에서 (편)입학 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 인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 일부 대학에서 개정법에 의한 교과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적용 시점에 관한 논란이 있어 (편)입학 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및 교과목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의 경우

가. 대상자

-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란 2005년 1월 30일 현재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로 아래 경우를 말함.

구 분		대 상 자
입 학 생	학과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학부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소속된 학부에 재학 중인 자
	계열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소속된 계열에 재학 중인 자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생		•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학부, 계열)로 편입한 자, 전과한 자, 복수전공하고 있는 자 ※ 편입, 전과, 복수전공 시기가 2005년 3월이더라도 2005년 1월 30일 현재 편입, 전과, 복수전공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재학 중인 자로 인정. 다만, 자격증 발급 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동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과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함

다. 유사 교과목 인정 범위

- 종전법에 의한 교과목의 경우 과목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로써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
- 현행법에 의한 교과목의 경우 보육기초, 보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발달과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영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별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2009년 보육사업안내부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 심의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함을 안내하고 있음

라.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교과목 인정 기준	학점 인정 기준	자격 등급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를 인정 • 2006학년도부터는 현행법 규정에 의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실습 실시 	10과목 30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1급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 이수 • 보육실습 실시 ※ 종전법과 현행법 규정에 의한 교과목을 혼합하여 이수하여도 무방 	10과목 30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1급

2) 2005년도 입학자의 경우

가. 대상자

- 2005년도 입학자란 2005학년도에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자 및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

나.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 종전 법과 개정 법에 의한 교과목을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함

※ 입학년도에 따라 교과목 설치·운영이 되는 대학 실정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개정 교과목을 시행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으므로, 종전 법과 개정 법에 의한 교과목을 모두를 인정하며,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

다. 유사 교과목 인정 범위

- 2005년 1월 29일 이전 입학자의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와 동일

라.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교과목 인정 기준	학점 인정 기준	자격 등급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 이수하는 경우 및 개정 법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모두 인정 • 다만, 현행법 교과목의 영역 중 보육기초, 보육 실습 영역은 반드시 이수 • 보육실습 실시 	12과목 35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2급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교과목 이수하는 경우 및 현행법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모두 인정 • 보육실습 실시 	12과목 35학점	졸업 시 보육교사 2급

3)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가. 대상자

- 2006년도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

나.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 ※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다. 유사 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기초, 보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발달과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영역은 유사교과목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별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 육 기 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 육 실 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2009년 보육사업안내부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 심의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함을 안내하고 있음

4) 편입학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에 대한 적용

가. 배경

- 대부분 대학의 경우 학과 및 교과목 운영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바, 편입생의 경우 주로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는데 편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입학년도에 따른 신·구법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졸업 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전과생 및 복수전공생의 경우도 그 시점이 4년제 대학의 2학년, 3학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졸업 시 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따라서,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에게는 별도의 적용 기준이 필요

나. 자격등급 및 교과목·학점 인정 기준

학점 인정 기준 및 졸업 시 보육교사 자격등급은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법과 현행법을 적용하되, 교과목은 탄력적으로 적용

- 교과목 인정 기준
 - 교과목 인정 기준은 편입, 전과, 복수전공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기준에 따름
- 학점 인정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총 10과목 30학점 이상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총 12과목 35학점 이상
- 자격등급 인정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보육교사 1급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보육교사 2급



3. 보육실습 기준 안내

1) 보육실습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 마련 통보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 3219, 2006. 12. 7)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함
 -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참 고

-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I, II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I, II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전후방학 포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 예 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 I,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 II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I, II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I, II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실습기관
 -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하여야 함
-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및 주간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학기 중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실습지도 교사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관리 철저 요청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2297, 2011. 7. 6)

가.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 ※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써 보육실습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실습 실시 기준
 -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실습시기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실습지도 교사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 보육실습 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p.163~165) 참고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나. 보육실습 관련 상담 사례(Q&A)

1. 보육실습 교과목 및 실습 미이수

- **(질문)** A대학에서 보육실습을 제외한 11과목 33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이후 시간제로 보육실습 교과목 및 보육실습을 이수해도 되나요?
(답변) 졸업 후 시간제로만 이수한 보육실습 교과목 및 보육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제로 보육실습 교과목 및 보육실습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2. 보육실습 기간 및 시간 불충족

- **(질문)** 주3회씩 7주 동안 보육실습을 이수해도 되나요?
(답변)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주3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1일 4시간씩 8주에 걸쳐 총 160시간 이상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므로 1일 4시간씩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보육실습기간 총 4주 중에서 1주는 주5회(월요일~금요일) 1일 12시간씩, 2주부터 4주까지는 주3회(월요일~수요일) 1일 12시간씩 실습을 이수하여 총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습기간이 4주,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3회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보육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보육실습 기간 중에 추석연휴 3일이 있어 보육실습 시간이 4주, 1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실습 기간 중 추석 연휴가 있는 경우 연휴 기간만큼 보육실습을 연속으로 이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3. 보육실습 기관 불충족

- **(질문)**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습했는데 보육실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이수해야 하므로 아동 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보육실습 이수당시 실습기관의 인가된 보육정원은 14인이었으나, 보육실습 종료 이후에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 이수당시 실습기관의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습당시 실습기관의 보육정원이 14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 불충족

- **(질문)**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이어야 하므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 지도 중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시점이 보육실습 중 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시작 이전에 지도교사의 자격을 확인하신 후에 보육실습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육실습 평가점수 불충족

- **(질문)**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을 75점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 교과목은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평가점수를 75점 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성적증명서에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P”로 표기되어 있는데 인정되나요?
(답변)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P”인 경우 보육실습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육교사 3급 제출서류 변경안내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735, 2011.5.2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의 경우 자격증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보육실습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실습이 이론으로만 배웠던 보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검정과정에서 보육실습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실습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그 동안 제출이 생략되었던 보육실습확인서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도록 변경하니, 아래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변경사항을 참조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귀 교육원의 교육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139~140쪽)의 “(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제출)서류 중 보육교사 3급의 구비(제출)서류란” 변경

현 행	변 경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신 설> <신 설>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③ <u>보육실습확인서</u> - <u>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u> - <u>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u> ④ <u>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u>

□ 적용시기 : 2011년 9월 1일 이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부터 적용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의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동 기준 위반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육실습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38, 2011.9.15)

- 우리부에서는 '11.9.1. 이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부터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보육실습확인서 및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관련 문서 : 보육사업기획과-1735호, 2011.5.25.)토록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한 사례 중 법령상 교과목 명칭 불일치, 이수학점 및 평가점수 누락 등으로 자격검정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5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의 교과목, 학점 기준 등 준수

나.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에는 영역별 이수 교과목, 이수학점 및 각 과목당 평가점수를 반드시 포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 합격 기준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붙임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예시)

제 호

성 적 증 명 서(예 시)

교육과정				교육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역	교과목	학점	성적	영역	교과목	학점	성적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3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	2	
	보육학개론	3			아동안전관리	2	
	보육과정	3			아동영양학	2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지역사회복지	3	
	아동생활지도	3			보육정책	2	
	아동상담(론)	3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3	
	특수아동지도 (특수교육학)	3			정보화교육	2	
	영유아보육의 실제	3					
	방과후아동지도	2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3		보육실습	보육실습	2	
	언어지도	2					
	아동음악과 동작	2		총 이수학점			
	아동미술	2					
	아동수·과학지도	2		총 이수시간			
	교재교구개발	3					
	영유아교수방법(론)	3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직인)

* 성적증명서는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사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다만, 영역별 교과목 및 이수학점, 평가점수(성적), 총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은 반드시 포함

** 성적은 백분위 점수로 표시(예 : 90점, 73점). 만약 A, B, C 등으로 평가시 각각의 점수를 별도 표시(예 : A(00점), B(00점))

5.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 기준 안내

1)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관련 경력인정 기준 통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53, 2011.9.16)

- 최근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업무상 재해)을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에 필요한 경력기간에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적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니,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 경력인정기준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경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은 동 기준을 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안내하는 등 자격증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을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력기간을 마련한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호봉 확정시 경력기간으로는 산입하되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 ※ 승급교육을 받기 위한 경력기간 산정에서도 육아휴직 및 병가기간은 제외하되, 이미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은 인정

*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승진, 승급(급여 산정 관련),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라는 규정일 뿐,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보육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기간에까지 해당 기간을 포함 시키라는 취지는 아님

2)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 경력 관련 질의 회신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132, 2012.4.13)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 인정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가 아닌 영유아플라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곤란.